

#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10월 5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10월 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5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09년 10월 15일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체육청소년과장 강성모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 번호를 조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한편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의 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함.(안 제 1조)
  - 제5조제3항 → 제5조제2항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없	음

### 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『원안의결』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”를 “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”를 “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제2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명이내로”를 “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”하고, 제3항 중 “자중에서”를 “자중에서”로 하며, “위원중”을 “위원 중”으로 하고, “2인이상”을 “2명 이상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간사등)”을 “(간사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시행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488호
의결 년월일	2009. 11. 23. (제157회)

제출년월일 : 2009. 10. 5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# □ 제안이유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 번호를 조정하고  
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는  
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  
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내용

- 가. 「국민체육진흥법」의 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함.(안 제  
1조)
  - 제5조제3항 → 제5조제2항

##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”를 “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”를 “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제2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명이내로”를 “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”하고, 제3항 중 “자중에서”를 “자 중에서”로 하며, “위원중”을 “위원 중”으로 하고, “2인이상”을 “2명 이상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간사등)”을 “(간사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시행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b>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 관한 조례</b>	<b>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</b>
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<u>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</u> 시에 두는 <u>체육진흥협의회</u> 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의 조직·운영에 <u>관하여 필요한 사항</u>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 (기능) 협의회는 다음 <u>각호</u>의 업무를 관장한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</u> 체육진흥을 위하여 <u>필요한 사항</u></p> <p>제3조 (구성) ①협의회는 의장, 부의장 <u>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</u>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<u>현신적으로</u> 활동할 수 있는 <u>자중에서</u> 의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<u>위원 중에는</u> 체육 전문직인사 <u>2인이상</u>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제2항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필요한----- -----.</p> <p>제2조(기능) 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 <p>제3조(구성) ① ----- -----<u>각 1명을 포함한 15명</u> <u>이내의 위원으로</u>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<u>자 중에서</u> -- ----- <u>위원 중</u> ----- <u>2명 이상</u>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4조 (위원의 임기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위원이 께워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7조 (간사등) ① <u>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.</u></p> <p>②~④ (생략)</p> <p>제8조 (시행세칙) 이 조례의 <u>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</u>은 협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</p>	<p>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제7조(간사 등) ① ----- -----<u>1명</u>----- -----.</p> <p>②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시행세칙) ----- <u>시행에 필요한</u> ----- ----- -----.</p>

## <관계법령 발췌서>

### ○ 국민체육진흥법

제5조 (지역체육진흥협의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